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동 협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021-38 |
|----------|---------|

발의연월일: 2021년 4월 일

발 의 자: 김동협, 신낙형, 박성호, 윤유선

이충현, 송순효, 강선영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년의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규정과 청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며, 실효적인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의 근거를 명시하고,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여 내실있는 청년정책 추진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청년의 대상 범위 명시(안 제2조)

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삭제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 규정 신설
(안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다. 위원회의 비상설화 규정 개정(안 제8조제4항, 제9조, 제10조제1항)

라. 청년의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 개정과 청년활동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신설 (안 제12조제3항, 제4항)

마.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규정 신설

(안 제19조제1항, 제2항, 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제5항
- 「청년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나. 협조부서: 일자리정책과

다. 입법예고: 2021. 4. 5.~4. 10.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의 제목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청년정책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 ① 구청장은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제3항 중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을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 활동을”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청년활동”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제19조의 제목 “(청년의 체육활동 강화)”를 “(청년의 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으로 한다.

제23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12조의 청년활동 지원 업무와 제 19조의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업무, 제21조의 청년시설의 관리·운영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p> <p>2. ~ 5. (생략)</p> <p>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p> <p>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p> <p>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p> <p>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p> | <p>제2조(정의) ----- -----.</p> <p>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5조(청년정책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삭 제></p> |

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

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

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문화 활성화

아. 청년의 체육활동 강화

자. 청년의 권리보호

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와 민·관·

산·학 협력 체계 구성 및 운

영

5. 그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 강서구의 주요정책
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③ ----- 시행계획-----

-----.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3.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략)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현행과 같음)

② -----
-----.

<삭제>

2. 3.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단,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④ (생략)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
청년활동-----

----- 범위-----
-----.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

제19조(청년의 체육활동 강화) 구
청장은 청년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
록 청년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
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
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
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
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
항 수립·시행

제19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구청
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
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
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다.

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방
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제21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⑤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⑥ (생략)

<신설>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23조 (생략)

제12조의 청년활동 지원 업무와 제19조의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업무, 제21조의 청년시설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

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1. 17., 2020. 8. 18.>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용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 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

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7. 1. 17.>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